

제 642 호
1978. 3.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 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224 호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 제 1225 호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8

◎ 규 칙

- 제 1738 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규칙..... 8

◎ 고 시

- 제 79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1
- 제 80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인가..... 12
- 제 83 호 : 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 및 지적승인..... 12
- 제 8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3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8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4
제 86 호 :	청계천 7 가 구역 제 3, 5 지구의 4 개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재개발조합설립 (제 3, 5 지구의 2 개지구) 인가.....	14
제 88 호 :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28
제 89 호 :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 변경결정.....	28
제 91 호 :	재개발사업소공제 1 지구시행인가 (사업기간연장) ...	29

◎ 공 고

제 80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29
제 81 호 :	무교제 8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30
제 82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지정공고.....	30
제 83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설립공고.....	31
제 84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 공고	31
제 85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32
제 86 호 :	서울특별시 관내 일부지역 전폐율 지정공고.....	32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 3. 1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㉑

◎서울특별시조례제 1224 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군) 제2항중 별표를 별첨과 같이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적학교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자가 속하는 학군에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1978 학년도 학군별 고등학교와 그에 속하는 중학교 일람

범	례
——	:학 군 계
——	:변경조정된학군계
- - - -	:시 계

고등학교학군도



(1) 학군별 고등학교 및 소속중학교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공 동	경 대 배 서 인 중 중 7 교	북 신 재 울 창 동 양 서울 특별 시 전 체 중 학 교	경 제 덕 배 숙 송 이 진 창 풍 10 교	기 성 성 화 명 의 화 명 덕 문 서울 특별 시 전 체 중 학 교
1 학군	고 대 서 신 영 경 홍 경 동 보 용 동 대 부 (12 교)	려 일 별 일 훈 동 익 신 성 성 문 삼 선 , 동 성 고 명 , 보 성 용 문 , 경 신 동 대 부 , 고 려 홍 익 , 신 일 영 훈 , 서 라 별 염 광 , 광 운 남 대 문 , 숭 덕 도 봉 , 수 유 (18 교)	성 신 사 부 창 한 상 명 사 대 부 정 신 여 혜 화 여 정 의 여 1 8 교)	성 신 , 정 신 한 성 , 성 신 부 동 구 , 고 려 도 봉 , 수 유 정 의 , 영 훈 성 암 , 염 광 도 봉 (중) 창 문 서 울 사 대 부 신 경 (16 교)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2 학군	경 회 대 광 서 울 사 대 부 용 문 경 동 배 명 성 동 동 대 부 고 동 성 (9 교)	대 광 , 성 일 동대문, 광신 서울사부, 경희 장 안 , 중 화 전 농 , 청 량 휘 경 , 재 현 태 능 , 중 량 (14 교)	경 회 동 덕 서 울 사 대 부 휘 경 송 곡 여 혜 원 여 (6 교)	동 덕 , 경 회 정 화 , 면 목 혜 원 , 송 곡 영 란 , 한 샘 동대문, 해성 휘 경 , 상 계 전 농 송 인 (14 교)
3 학군	수 도 사 대 부 영 동 한 영 경 기 성 동 장 충 동 북 대 원 배 명 휘 문 (10 교)	덕 수 한 양 , 광 희 성 동 , 배 명 한 영 , 동 북 장 충 , 대 경 수 도 부 , 성 수 진 국 , 대 원 배 재 , 선 화 (15 교)	무 학 수 도 사 대 부 한 양 명 성 진 선 은 광 여 영 동 (7 교)	무 학 , 한 양 행 당 , 서 울 사 대 계 성 , 중 의 장 충 , 금 호 수 도 부 , 성 수 명 성 , 선 화 (12 교)
4 학군	오 산 상 문 배 문 용 산	송 실 , 용 산 선 린 , 신 용 산 단 국 , 오 산 한 강	상 명 성 심 보 성 신 광	신 광 , 용 산 보 성 , 상 명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4 교)	(7 교)	수 도 여 (5 교)	(4 교)
5 학군	경 성 마 포 광 성 송 문 이 대 부 여 의 도 고 환 일 한 성 양 정 배 문 (10 교)	경 성 , 광 성 송 문 , 마 포 이대부, 동도 경 서 , 배 문 환 일 , 양 정 예 원 , 한 성 중 앙 , 중 동 휘 문 , 대 동 수 도 (17 교)	홍 익 대 부 여 금 란 서 울 이 대 부 중 앙 여 (5 교)	중 앙 , 성 정 금 란 , 홍 익 마 포 , 성 산 이대부, 서울 창 덕 , 예 원 덕 성 , 숙 명 진 명 , 풍 문 (14 교)
6 학군	대 성 명 지 충 암 환 일 양 정 송 실 (6 교)	중 앙 , 중 동 대 경 , 청 운 보 인 , 대 신 서대문, 영락 대 성 , 연 서 명 지 , 충 암 인 창 , 불 광 (17 교)	동 명 명 지 선 일 예 일 성 정 상 명 사 대 부 (6 교)	덕 성 , 숙 명 진 명 , 풍 문 성 정 , 배 화 동명, 상명부 문영, 예 일 정 원 , 선 일 명 지 , 연 희 충 암 (15 교)
7 학군	관 악 여 의 도 강 서	장 훈 , 영 도 당 산 , 영 일 강 서 , 유 한	영 등 포 서 울 홍 익 대 부 여	영 등 포, 봉영 한 강 , 문 일 동 일 , 강 서

학군별	남 자		여 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속 중 학 교
7 학군	문 일	공항, 여의도	동 일	대림, 화곡
	영 일	화곡, 우신		오류, 여의도
	우 신	오 류		공항, 영일
	장 훈			
	(7 교)	(11 교)	(4 교)	(12 교)
8 학군	경 기	영동, 천호	구 선	영동, 천호
	영 동	동신, 휘문	영 동	영파, 일신
	휘 문	일신, 신천	영 파	신천, 위례
	상 문		은 광	진선, 은광
	(4 교)	(6 교)	(4 교)	(8 교)
9 학군	영 등 포	영 등 포	서 문	강남, 봉천
	중앙대부고	강남, 상도	중대부여	상도, 신림
	성 남	봉천, 신림	세 화	중대부
	장 훈	반포, 성남	상 명	대방, 반포
	우 신	동양, 중대부	신 광	세 화
	여 의 도	남 강		
	상 문			
	남 강			
	관 악			
	문 일			
	(10 교)	(10 교)	(5 교)	(8 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 3. 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인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225 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제 2 항 (명칭과 위치)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명 칭	위 치
1. 서울남대문국민학교부설청소년직업학교	중구남대문로 4 가 45 의 1
2. 서울고등국민학교부설청소년직업학교	종로구경운동 18
3. 서울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청소년직업학교	중구홍인동 1 의 1
4. 서울북공업고등학교부설청소년직업학교	성북구하월곡동 90 의 1
5. 서울청량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청소년직업학교	동대문구청량리동 3 의 1
6.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	영등포구영등포동 5 가 48

규 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8년 3월 10 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738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8 조 (시유재산의 총괄 및 관리
자 지정) 제 3 항의 제 5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

다만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잡종재산의 일부를 청소의장에게 위임하여 관리 처분케 할 수 있다.

제 118 조 (시유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 출장소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재산현황 조사결과 재산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총괄자에게 재분류 요구
2. 무단점유 시유재산을 색출하여 점용료 부과장수 또는 행정재산은 관리자, 보통재산은 총괄자에게 무단점유 사실보고
3. 시유재산의 훼손행위 방지조치 및 은닉 재산의 색출

제 118 조의 2 (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총괄자는 관리자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보통재산으로 되는 시유재산을 재분류하고 그 처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 12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7 조 (등기절차) 시유재산을 취

득하였을 때에는 취득한 재산관리자는 총괄자에게 등기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가 직접 등기하여 등기권리증 첨부 총괄자에게 재산 이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등기
2.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된 재산등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양수 재산등기
4. 신규로 등록된 시유재산의 등기
5. 신축, 개축된 청사의 등기
6. 기부 채납된 재산등기
7. 교환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

제 134 조의 2 (대부요율) 제 1 항중 제 3 호,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공원법 제 2 조 제 4 호에 규정하는 도시공원 시설내의 재산을 포함한다) 은 재산가액의 년 5분이상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 또는 대부시에는 재산가액의 년 5분이상

제 134 조의 2 (대부요율) 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물대부료의 산정은 건물평가액

과 대지평가액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합산액을 당해 재산가액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한다.

1.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2.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3층은 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대지평가액의 5분의1
마. 지하실은 대지평가액의 3분의1

제 135 조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5 조 (대부신청) ① 관리자가 관리하는 사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대부실태조서 (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4. 차수목적

5. 대부기간

6. 도면

7. 공부상 필요한 증명 (토지·가옥 대장 등본, 건축대지 증명)

8. 공인법인인 경우 공익법인임을 확인하는 주무부장관의 확인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5 조의 2 (대부조건)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1택지미만의 공지가 인접한 건물부지와 합필하여 사용합이 토지의 효용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그 토지를 영 제 63 조제 4 항제 1 호에 규정된 부지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독립된 건물의 부지로 사용허가가 부적당한 토지도 또한 같다.

제 136 조의 2 (매각재산대금납부) 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 대금일시 납부기간은 2개월내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약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매각재산대금이 10 억원이상일 때는 4개월까지 50 억원이상일 때는 6개월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 138 조 (대장 및 도면의 조제) 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통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5. 보존재산대장

다만,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재산총괄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79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전설부고시 제 41 호 (19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 7

서울특별시장

○ 결정, 변경결정 (공용의 청사) 조서

구 분	지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공용의청사	동대 문구신설동 97 부근	3,356 (1,015.2평)	동대 문구청사부지
변경 후	"	"	4,195 (1,269 평)	추가 : 253.2평 (사유지)
신 설	"	서대 문구합동 27-1 부근	5,038 (1,524 평)	수도국청사부지 시유지 : 1,187 평 사유지 : 337 평
신 설	"	종로구세종로 84 부근	10,241 (3,098 평)	국제전신종합 국사부지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0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53 호 (77.5.18) 로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되었으며, 동 공고 제 123 호 (77.6.8) 로 사업시행자 지적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남구서초동산 185 부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인가
3. 사업시행면적 : 100,400 m^2
(30,371 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법원 행정처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년월일 : 1978. 3. .

나. 준공예정년월일 : 1979.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3 호

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하천)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 9

서울특별시장

○ 결 정 조 서

구분	시 설 명	목원	연 장	기 점	중 점
신설	하천 (청계천)	78-84 ^m	5,300 m	오간수교	중량천 합류점
"	" (홍제천)	65-84 ^m	11,950 m	평창동 65 일대	성산동 한강합류점
"	" (성북천)	21 ^m	5,710 m	성북동 13 일대	(5,110m)
				성북동 245 일대	청계천합류점 (600 m)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목원	연 장	기 점	중 점
신설	하천 (홍제천)	65-84 ^m	11,950 m	평창동 65 일대	성산동 한강합류점
"	하천 (성북천)	21	5,110 m	성북동 245 일대	신설동청계천(4,510 m)
				성북동 13 일대	합류점 (600 m)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

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 9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 원	연 장	시 점	중 점	비고
기정	소로	1		10-15m	240 m	월계동 402-2	성북역앞	
변경	중로	1	182	20	700	장위동 (대 3-4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 가.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부고시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 9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중로	1	181	20	1,440 ^m	신천동 (광 29)	풍납동 (광 34)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청계천 7 가구역 제 3, 5 지구의
4 개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및
재개발조합설립 (3, 5 지구의
2 개지구) 인가

1. 건설부고시제 104 호 (76.7.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64 호 (77.3.1) 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청계천 7 가구역 제 3, 5 지구의 4 개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재개발조합설립 (제 3, 5 지구의 2 개지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되었기 도시개발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청계천 7 가구역 각 지

구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1978. 3. 9

서울특별시장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나. 시행구역 및 면적
다.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
라. 시행기간
마. 시행인가 년월일
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명세참조

(별첨참조)

재 개발 사업 시행 인 가 사 항

구분 \ 지구 별	제 3, 5 지구	제 4 지 구	제 6 지 구	제 7, 8 지구	제 9 지 구
1. 재개발사업의 명칭	청계천 7가구역 제3,5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가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가구역 제7,8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가구역 제9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39 외 26필일대 1,240.2 평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38 외 5필일대 253.8 평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26 외 15필일대 636.0 평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20 외 20필일대 1,062.7 평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34 외 10필일대 215.8 평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67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38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2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2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34
4. 시행기간	시행인가일 - 1978.12.31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5. 시행인가년월일	1978.3.9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67 변경전 : 청계천 7가제 3,5지구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24인 대표 김한주 변경후 : 청계천 7가제 3,5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한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38 청계천 7가제 4지구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4인 대표 조현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26 청계천 7가제 6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최석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20 청계천 7가제 7,8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허응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34 청계천 7가제 9지구 토지소유자 6인 대표 최규영
비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호(77.6.30)로 시행허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호(77.6.30)로 시행허가			

제 642 호

지

부

1978. 3. 10 32-15

138

32-15

(제 3, 5 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가.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자 이외의 관계인 조서			비 고
						권리종목	권리내용	권 리 자 주 소 성 명	
신당동	217-21	대	120평	동대문구 창신동 687-15	윤정업		없 음		
"	217-25	"	27 "	중구 신당동 217-25	고춘석		"		
"	217-26	"	30 "	" 220-25	박재훈		"		
"	204-19	"	50 "	" 204-19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19 " 남산동 2 가 4	조영래 김중갑 김인규	근저당	" 2,300,000 없 음	중구 남대문 2 가 9 주식 회 사 국민 은행	($\frac{17}{72}$) (등기상) ($\frac{21}{72}$) 12평 ($\frac{25.6}{72}$) ($\frac{8.4}{72}$)
"	217-26	"	33 "	영등포구 영등포동 2 가 33-102	강필영		"		
"	217-39	"	178 "	성북구 하월곡동 20-4	홍택선		"		
"	217-41	"	33 "	중구 신당동 217-41	문명진		"		
"	204-22	"	12 "	" 204-22 " 204-22 국	김일환 차진욱		" "		($\frac{25.7}{65}$) ($\frac{25.1}{65}$) (13.2) ($\frac{65}{65}$)
"	217-12	"	24 "	중구 신당동 220-17	함성준		"		
"	217-73	"	28 "	중구 신당동 220-17 217-61 성동구 용답동 141-3	함성준 정용백 이연우	가등기 가압류	없 음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 없 음	아산군 둔포면 운흥리 박경근 성북구 정능동 387 왕백인	$\frac{2}{28}$ $\frac{13}{28}$ $\frac{13}{28}$ $\frac{2}{28}$
"	217-31	"	66평중 19.2평	안양시 안양읍 603-3	조상래	32-16	"		
"	204-69	"	1평	중구 신당동 204-22	유금옥		"		등기상 204-51

32-16 제 642호

지

보

1978. 3. 10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이외의 관계인 조서			비고
						권리 종목	권리내용	권리자 주소 성명	
신당동	217-24	대	17평	중구신당동 217-24	박의성		없음		
"	217-62	"	23평	" 217-24	박의성		"		
"	217-67	"	98평	" 217-67	김한주		"		
"	217-28	"	33평	성동구 행당동 159-6	김의현		"		
"	217-33	"	32평	성북구 하월곡동 20-4	정명복		"		
"	217-33	"	32평	중구신당동 217-13	양만옥		"		
"	222-3	도로	869평 중 77평	서울특별시			"		현도로
"	217-27	대	32평	국 (국세청)			"		"
"	217-60	"	8평	국			"		"
"	217-29	"	29평	광주시충장로 3가 24	박기인	근저당 2억 원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 대화모방주식회사		
"	217-37	"	40평	광주시충장로 3가 24	박기인	근저당 2억 원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 대화모방주식회사		
"	217-35	"	45평	광주시충장로 3가 24	박기인	근저당 2억 원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 대화모방주식회사		
"	217-61	"	59평	중구신당동 217-61	정안석	근저당	4,800,000	중구을지로 2가 3-1 중소기업은행	
"	220-22	"	161평 중 40평	도봉구월계동 392-56	정명복	근저당		행당동 159-6 박의현	
"	217-14	"	99평	을지로 2가 69-1	회원리걸				등기상 105 평 현도로
"	217-13	"	33평	중구신당동 217-13	김용훈		없음		
			1,240.2평						

제 642 호 시

본 1978. 3. 10 32-17

나. 건 물									
지 번	용도	구 조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자 이외의 권리 조서			비고
						권리종류	권리내용	관리자주소 성명	
217-21	주택	연와조 와좁	1층 32 평 2층 22 " 계 54 평	동대문창신동 687-15	윤정엽		없음		
217-25	"	목조 와좁	14평	중구신당동 217-25	고춘석		"		
217-26	"	세면부덕 조세면와좁	11.42 평	" 220-25	박재훈		"		
217-41	"	목조 와좁	16.33 평	" 217-41	문명진		"		
217-36	"	목조와좁 연와조	1 평 19 평 계 20 평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102	강필영		"		
217-67	"	목조 와좁	1층 30 평	중구신당동 21 - 67	김한주		"		
204-19 -20	"	목조 와좁	1층 12 평 2층 10.5 평 계 22.5 평	" 204-19	조영례		"		
217-29 217-35 217-37	주택 영업	철근콘크리트	지하 75.83 1층 75.32 2층 75.32 3층 75.32 4층 75.32 5층 75.32 6층 42.79 계 495.22	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 24	박기인	근저당 근저당	2억원 1억원	중구남대문로 2가 10-1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영등포구 양평동 3가 79 대한모방주식회사	
			663.47 평						

32-18 제 642호

시

표

1978. 3. 10

(제 4 지구)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가.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권리내용	권리자주소성명	
중구신당동	217-38	대	55평	조현주	도봉구수유동408-22		해당사항	없음.	등기상 106평 으로 되어있음
"	217-88	"	51평	"	"				
"	217-32	"	45평	이영화	성동구구의동 27-2				
"	217-34	"	7평	이상린	중구신당동 198-13				
"	217-74	"	49평	"	"				
"	217-31	"	66평중 46.8평	조상래	경기도안양시안양동 603-3				

계 253.8 평

나. 건 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권리내용	채권자주소성명	
중구신당동	217-32	목조 와 평가건	19.52평	이영화	성동구구의동 27-2		해당사항	없음	

제 642 호

지

표

1978. 3. 10 32-19

140

32-19

(제 6 지 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1)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종류	권리내용	관계인주소성명
중구신당동	204-26	대	113.0평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9-28	최석기		없음	
"	204-27	"	51.0 "	" 중구신당동 204-27	정용구		"	
"	193-14	"	44.0 "	" " 193-14	한창익		"	
"	193-21	"	51.0 "	" " 193-21	김교택			
"	193-11	"	60.0 "	" 중구홍인동 119	주식회사 평화건설사		1975. 4. 15. 700,000,000원	소공동 91-1 서울신탁은행
"	193-19	"	68.0 "	" 중구신당동 193-19	박재훈		없음	
"	193-23	"	37.0 "	충주시용탄동 1037	진희두		"	
"	222-3	도로	869평중 64.3		서울시		"	
"	204-18	대	64.0평중 23.4	서울시 을지로 7가 1	조선산업무 역주식회사		"	
"	193-35	"	2.0평	서울시 신당동 193-17	윤재은		"	
"	193-12	"	21.0평중 12.3		국		"	
"	217-64	"	27.0평	서울시 신당동 198-23	강두영		"	
"	217-65	"	27.0 "	" 영등포구 신도림동 1037-11	안충호		"	
"	217-66	"	28.0 "	" 중구신당동 217-66	장대순	근저당설정	1976. 11. 29. 5,000,000원	주식회사 금성사
"	217-11	"	27.0 "	" " 217-66	장대순	근저당설정	1972. 12. 19. 1,500,000원	국민은행 평화지점
"	193-33	"	1.0 "	" " 193-13	김창섭			국민은행 평화지점
계	16		636.0 "	32-20				

32-20

제 642호

시

표

1978. 3. 10

(2) 건 물

소재지	지번	구조	평수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권리종목	권리내용	
중구신당동	204-26	목조 와즙	49.8평	서울시동대문구용두동 119-28	최석기		없음	
"	204-27	"	25.6	서울시중구신당동 204-27	정용규		"	
"	193-14	"	16.5	서울시중구신당동 193-14	한창익		"	
"	193-21	"	13.5	서울시중구신당동 193-21	김교택	근저당설정	1983. 3. 2. 1,610,000원	제일은행
"	193-11	"	20.03	서울시 중구홍인동 119	평화건설 업사	"		
"	193-23	"	13.83	충주시용탄동산 1037	진희두			
"	193-17	"	9.25	서울시 신당동 193-17	윤재은			
"	217-65	"	13.0	서울시영등포구신도림동 1037-11	안중호			
"	217-66	"	17.79	서울시 중구신당동 217-66	장대순	근저당설정	1976.11.29. 5,000,000원	주식회사 대건건설
"	217-11	"	12.0	서울시 중구신당동 217-66	장대순			
계	9		179.3					

제 642 호

시

표

1978. 3. 10

32-21

(제 7, 8 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권리종류	권리내용	관계인주소, 성명
중구신당동	213-20	대	598평	장춘동 2가 77-2	허응구	없음	없음	없음
"	213-35	"	22 "	상 동	"	"	"	"
"	213-36	"	4 "	"	"	"	"	"
"	213-33	"	26 "	신당동 213-16	이순업	"	"	"
"	213-17	"	13.4평 14평	신당동 213-17	강초봉	"	"	"
"	213-16	"	15평	신당동 213-11	김종옥	"	"	"
"	213-57	"	27 "	상도 3동 193-9	전효식	"	"	"
"	213-43	"	23 "	신당동 213-43	정현하	"	"	"
"	213-45	"	12 "	구외동 250-의 4	이재휘	"	"	"
"	217-5	"	47 "	신당동 217-5	박재훈	"	"	"
"	213-23	"	52 "	웅봉동 134-62	김태연	"	"	"
"	213-18	"	28 "	신당동 213-37	오덕순	근저당	4,500,000원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32-22 제 642호

지

보

1978. 3. 10

26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권리종류	권리내용	관계인주소, 성명
중구신당동	213-27	대	36 평	신당동 213-27	한 신 회 김 성 호 김 문 호	압류 근저당 설	350,000 130,000 525,000 1,000,000	서울특별시 (성, 동구청) 한일은행 후암동400-9 김춘규 산일동205-3 백영숙
"	213-19	"	33.0 "	신당동 213-39	이 완 기	없 음	없 음	없 음
"	213-39	"	30.0 "	상 동	"	"	"	"
"	213-46	"	6 "	국	"	"	"	"
"	213-58	"	4 "	"	"	"	"	"
"	213-9	"	333 중	조선산업주식회사	"	"	"	"
"		"	26.6 평	을지로7가1	"	"	"	"
"	217-30	"	4	국 (국세청)	"	"	"	"
"	222-3	"	869 중 54.3 평	서울특별시	"	"	"	"
"	213-32	"	9 중 1.4 평	신당동 213-11	김 중 욱	"	"	동기상 213-11
				성동구외동250-4	이 재 휘			
				신당동 213-11	원 장 회			
계	21		1,062.7		국			

부 642 호

스

부

1978. 3. 10

32-23

(2) 건 물									
소재지	지 번	용 도	구 조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관계인 조서		
					주 소	성 명	권 리 종 류	권 리 내 용	관계인 주소 성 명
중구신당동	213-20	창 고	목 조	84 평	장충동 2가 77-2	허응구	없음	없음	없음
"	-21		도 단 좁						
"	213-35	주 택	목 조	1층 2 "	상 동	"	"	"	"
"			와 좁	2층 0 "					
"	213-33	"	목 조	16 "	신당동 213-16	이순업	"	"	"
"	213-17	"	도 단 좁						
"			목조와좁	1층 9.08	신당동 213-17	강초봉	"	"	"
"				2층 10.4					
"	213-11	"	"	12	신당동 213-11	김종옥	"	"	"
"	213-57	"	목조와좁	1층 16.9	상도 3동 193-9	전효식	"	"	"
"			부속건물	2층 1.0					
"	213-43	"	목 조	1층 12.25	신당동 213-43	정현규	"	"	"
"				2층 10.25					
"	217-5	"	목조와좁	1층 34.33	신당동 217-5	박재훈	"	"	"
"				2층 33평					
"	213-23	공 장	목 조	1층 40 "	광희동 1가 132	김태식	"	"	"
"			도 단 좁	2층 40 "	32-24				

32-24 보 642 호

시

년

1978. 3. 10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관계인조서		
					주소	성명	권리종류	관리내용	관계인주소성명
중구신당동	213-18	주택	목조와즙	1층 19 평 2층 17.6 "	신당동 213-37	오낙순	근저당	4,500,000	남대문2가9-1 주식회사국민은행
"	213-27	"	목조 스레트즙	17.75 "	신당동 213-27	한신희 김성호 김문호	"	390,000 1,30,000 525,000 1,000,000	남대문로2가35 한일은행 "후압동 400-9 김춘규 신설동 205-3 백병숙
"	213-39	"	목조와즙	19 "	신당동 213-39	이완기	없음	없음	없음
"	213-39	"	"	8 "	상동	"	"	"	"
"	213-45	"	"	12 "	성동구구의동250-4	이재휘	"	"	"

보 642 호 시 보 1978. 3.10 32-25

(제 9 지 구) 수 용 또는 사 용 할 토 지 건 축 물 의 명 세 및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1 . 토 지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소 유 자 이 외 의 관 계 인			비 고
					권 리 종 류	권 리 내 용	관 계 인 주 소 , 성 명	
신당동	213-34	대	61 평	중 구 을 지 로 3 가 202-1 최 규 영	없 음	없 음	없 음	
"	-15	"	48	" 신당동 213-15 홍 한 유	"	"	"	
"	-64	"	20 중	" " 220-15 2/20 국 (국세청)	"	"	"	
"			19	" " 18/20 표 천 근	"	"	"	
"	-61	"	14	" " 213-61 황 보 인 택	"	"	"	
"	-40	"	12 중 3	" " 213-34	"	"	"	
"	-60	"	13	" " 213-60 이 병 울	"	"	"	
"	-62	"	9	성동구행당동 151-5 이 주 술	"	"	"	
"	-63	"	59 중	" " 9/59 국 (국세청)	"	"	"	
"			8(도로)	중 구 남 대 문 로 2 가 5 50/59 한국전력주식회사	"	"	"	
"	217-40	"	11	" " 국 (국세청)	"	"	"	
"	-63	"	6	" " 국 (국세청)	"	"	"	
"	213-9	"	33.3 중 23.8	중 구 을 지 로 1 가 1 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	"	"	
	계		215.8 평	32-26				

2. 가 옥								
동 명	지 번	구 분	면 적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소유자의외관계인조서			비고
					권 리 종 류	권 리 내 용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신 당 동	213-34	공장	34.07	충구 을지로 3가 202-1 최 규 영	없 음	없 음	없 음	
"	-15	주택	28.49	" 신당동 213-15 홍 한 유	"	"	"	
"	-61	"	6.22	" " 213-61 황 보 인택	"	"	"	
"	-62	"	4.77	" 행당동 151-5 이 주 술	"	"	"	
계		공장 주택	34.07 39.48					

제 642 호

시

보

1978. 3. 10 32-27

144

32-27

◎서울특별시고시 제 88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 (군)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3.10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및규모	비 고
신설	개봉케이블해드	시흥군서면광명리 159-96외 7필지	673 ㎡ (204평)	
기정	성북변전소	도봉구쌍문동 388-1 외 2 필지	18,906 ㎡ (5,725 평)	
변경	"	" " 380-1 "	"	도면정정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 89 호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아동공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부입니다.

1978. 3.1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 계획 시설 (아동공원) 변경결정조서

공원의 종 류	공 원 명	위 치	면 -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확정	
아동공원	신당제1 아동공원	충구신당동 249 일원	5,324	5,324	0	수도관리사 업소부지
아동공원	영등포제1 아동공원	영등포구영등포동 2가 140번지	7,447	7,447	0	영등포병원 부 지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91 호

재개발사업 소공제1지구
시행인가 (사업기간연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3 (77.10.29) 호로 시행인가된 재개발사업
소공제1지구 사업기간을 도시재개발
법 제12조 및 16조와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한다.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중구 태
평로 2가19-2 일대

나. 시행면적 : 4,601 ㎡ (1,391.9평)

다. 시행자 : 중구태평로 2가23번지
태평개발(주) 대표이사 권혁중

라. 시 행 기 간

당초 : 74.6.28 - 77.12.31

변경 : 74.6.28 - 78. 9.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
물의 명세 및 소유 권이외의 권
리명세 : 별첨생략

사. 시행기간 변경사유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미확보

및 지장물 미철거

1978. 3

서울특별시 장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80 호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 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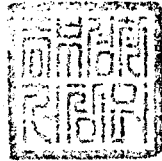
1978. 3

서울특별시 장

1. 사용개시일자 1978.3.13

2. 인 영 별첨

공 인 의 인 영



중 부 경 찰 서 장 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81 호

무교제 3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 46 호 (76.4.7) 로
재개발구역 세분화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4 호 (76.11.5) 로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대
표 박응석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시행인가 신청
이 접수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를 공람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하시기 바랍니
다.

가. 시행지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
9번지의 1 호외 4 필지

나. 대 지 : 305.6 평

건 평 : 180.6 평 (기존건물포함)

연건평 : 2,306 평 (기존건물포함)

용 도 : 사 무 실

다. 사업시행기간 : 78.4 - 79.12

라. 시행자 : 토지소유자대표 박응석

마. 공람기간 : 78.3.13-4.11(30일간)

바.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
정비과 (75-6827)

2) 서울시중로구세종로 202
세광빌딩관리실 (72-8864)

1978.3.1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82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
및 지정공고

1. 신림, 신림추가, 시흥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 호 (78.1.31) 로 공람공고한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변경인
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
라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조서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
도로 통보 할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1978. 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8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공업
협동조합설립공고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공업 협동조합
의 설립을 서울특별시 단체감독 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8. 3

서울특별시장

1. 설립목적

서울특별시에 산재하고 있는 자
동차정비 사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
고 협동사업을 통한 공동이익 추
구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합명칭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3. 대 표 자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223-86

성명: 지 태 하

4. 사 무 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3가77-1

5. 설립년월일

1978. 2. 3

6. 사무(업무)구역: 서울특별시일원

◎서울특별시 공고제 8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지정요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동 요령 제 4 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8. 3

서울특별시장

지정업체조서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8년수출 목표액	비고
508	경일모방(주)	박수명	성북구정릉동735-1	방모사	\$ 1,118,000	

◎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아파트지구) 일부 환지에 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 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8. 2.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 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8,844.7 평

2. 지정전폐율

지 역	지 정 전 폐 율 (%)
주 거 전 용 지 역	40
주 거 지 역	50
준 주 거 지 역	60
상 업 지 역	60
공업지역(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50
녹 지 지 역	법정전폐율과 동일

나. 변경위치 : 강남구서초동 503 의
3 호외 117 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 86 호

서울특별시관내 일부지역
전 폐율지정공고

건축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계획 및 도
시의 파밀화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
시관내 일부지역의 전폐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동령 제 158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함.

1978. 3. 13.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
역,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 재개발
지구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의 방화지구와 각 지구별 조례에
서 해당전폐율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제외함.